

참 고 자 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14조(개회)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회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u><신설></u>	제14조(개회) ① ----- ----- -----. ② 본회의는 1일에 1차 회의를 가지며,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u>다른</u> 안건을 의사일정에 <u>추가</u>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 ----- ----- ----- ----- <u>특정</u> ----- <u>추가 또는 삭제</u> ----. ----- -----.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22조의2(입법 예고) ① 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주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 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의2(입법 예고) ① 의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시보나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②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8조(변안) 변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제28조(변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안동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1.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변안 동의를 발의한 경우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29조(안전심의) ① ~ ③ (생략)	2. <u>위원회 제안 또는 시장·교육감이 제출한 안전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번안 요구가 있는 경우</u> <u>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소속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u> <u>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안전이 부결되는 경우 당해 안전은 이미 의결된 내용대로 확정되고, 그 안전에 대하여는 다시 번안할 수 없다.</u> 제29조(안전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다음 각 호의 안전은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한다.</u> <u>1. 선거 및 사임 동의</u> <u>2. 불신임 및 회기 중 사직 허가</u> <u>3. 위원 선임·개선 또는 보임</u> <u>4. 5일 초과 청가 허가</u> <u>5. 결산검사위원 선임</u> <u>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u> <u>7. 재의 또는 본회의 의결안전 번안</u> <u>8. 행정사무조사 발의</u> <u>9. 시정질문 및 추진상황 보고</u>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37조(<u>발언회수의 제한</u>)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u>의장이 허가</u>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u>표결의 선포</u>) ① (생략)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10. <u>재정 및 인력 관련 보고</u> 11. <u>본회의 출석 요구</u> 12. <u>회기 결정 및 휴회 결의</u> 13. <u>의안 정리권 위임</u> 14. <u>본회의 의사일정 변경</u> 15. <u>본회의 투표지 공개</u> 16. <u>위원회 개최 요구</u> 17. <u>위원회 폐기의안 재심의</u> 18. <u>본회의 비공개회의 동의</u> 19. <u>본회의 경찰관 파견요구 동의</u> 20. 그 밖에 본회의가 직접 심의하기로 의결한 안건 제37조(<u>발언횟수의 제한</u>) ----- ----- ----- ----- ----- -- <u>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u> --- -----. 제43조(<u>표결의 선포</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만,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을 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허가할 수 있다.</u>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u><신설></u>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 ----- -----.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의2(투표지의 보관 및 공개) 의장은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는 당해 의원의 임기동안 봉인하여 보관하고, 투표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u>개회·폐회에 관한 사항</u> 2. <u>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u> 3. 의사일정 4. <u>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u> 5. <u>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u>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과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u>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u>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u>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u>개회식에 관한 사항</u> 2. <u>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u> 3. 의사일정 4. <u>출석의원의 성명과 수</u> 5. <u>출석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u>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14. <u>그 밖에</u> ----- ----- ② <u>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u>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 동안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② <u>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u>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u><후단 신설></u>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u>위원회는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u>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하고, 의회에 보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u>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 ----- -----. <u>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장과 소속 위원에게 통지(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u> 제55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u>법 제61조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시간 중에 개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u>전문위원</u> (<u>전문위원을 두는 경우</u>)의 검토보고를 듣고 <u>질의·토론·축조심사</u>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창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u>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u><신설></u>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 <u>전문위원</u>의 검토보고를 듣고 <u>질의·토론 및 창조심사</u>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창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u>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시장·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 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시장·교육감이 제출한 다른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u>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u><신설></u>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제58조의2(위원회 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2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 중 소속 위원이 그 안건을 발의한 경우 발의 위원도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하였거나 자발적으로 회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출석한 공무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u>기타</u>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u>그 밖에</u>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u>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제67조의2(준용규정)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보고, “의장”은 “위원장”으로 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 간담회”로 본다.</u>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73조(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에 관해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u>의장을 경유하여</u> 시장·교육감 또는 <u>관계공무원</u>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교육감 또는 <u>관계공무원</u>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u>사전 제출</u>한 후에 <u>관계공무원</u>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u> -----. ③ ----- <u>관계공무원 등</u> ----- ----- <u>늦어도 1일 전까지 제출</u> --- <u>관계공무원 등</u> -----.
제73조의2(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및 교육 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2(시정질문)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우선한다. ③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u>일괄질문·일괄답변</u>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u>질문</u>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의 <u>양해를 구하여</u>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48시간 전(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일괄질문·일괄답변과 서면 질문·구두답변</u> ----- ----- ----- -----. ⑤ <u>해당 질문</u> ----- ----- <u>양해가 있는 경우</u>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신설> <신설>	⑦ 의장은 효율적인 질문을 위하여 의원이 일괄질문·서면답변이나 서면질문·구두답변을 병행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3조의3(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 등) ① 시장과 교육감은 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한하여 늦어도 답변시간 3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답변이 시작되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답변을 듣는 도중에 보충질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서면질문을 포함한다)을 관리하고 정례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74조(시장·교육감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의원이 시장·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의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4조(시장·교육감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의원은 폐회나 휴회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서면 질문서를 지체 없이 시장·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교육감의 답변은 보충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 ③ (생략)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u><단서 신설></u> <u><신설></u>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u>기타</u>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u>소지한 자</u>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과 단체방청인은 기재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처 직원이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장애인의 방청을 허가한 경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 ----- ----- -----. 1. ----- ----- 2. ----- 3. <u>그 밖에</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소지한 사람</u> ----- -----.

현행	개정 (2013. 7. 15. 공포·시행)
제87조의2(준용)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제82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u>소관 위원회 위원장</u>”으로, “사무처장”은 “<u>소관 위원회 전문위원</u>”으로 본다.	제87조의2(준용규정) ----- ----- ----- ----- “<u>위원장</u>” ----- ----- “<u>전문위원</u>” -----.